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5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5월 12일

3. 제안이유

가.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

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

나.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따라

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국가 유공자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

-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인 자가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직계존·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·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

⇒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하도록 함 (안 제2조 제3항)

나.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변경

-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어
⇒ 지역신용보증재단법(99. 9. 7 제정공포, 2000. 3. 1)에 의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(안제26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바
-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1급내지 6급인 대상자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예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도세를 면제하려는 것이고,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예 따라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
-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도세 세액의 현황과 감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: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